





**제5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**

한도거래 및 외화대출의 경우 제1조의 여신(한도)금액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,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.

**제6조 인지세의 부담**

-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(□본인, □은행, □각 50%씩 본인과 은행)이 부담합니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

**제7조 상환통화 및 환율**

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,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.

**제8조 담보 · 보험**

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 · 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,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.

**제9조 담보권 설정**

-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(통장)의 인도를 마쳤습니다.
-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 · 수익권(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)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· 수익의 수익권, 특별장려금,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.
-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 · 개시 · 갱신 · 분할 · 병합 · 증액 · 감액 또는 이자원기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, 그 목적인 신약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.
-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.

■ (근)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:

종 별	증서 기 · 번호	명의로 또는 위탁자	금 액 (계약액)	20 . . . . . 까지 입금누계액	증서일자	지급일
	계좌번호	수익자				

**제10조 상환자격 유지의무 등**

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.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.

구 분	20 . . . . .	20 . . . . .	20 . . . . .	20 . . . . .	20 . . . . .
부채비율	%	%	%	%	%
자기자본비율	%	%	%	%	%
( )비율	%	%	%	%	%
( )비율	%	%	%	%	%

-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.
  1. 합병,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 · 임대
  2.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
  3.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
  4.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
  5. 기업구조 개선 작업(Work Out)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.
  1.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
  2. 지배주주의 출자
  3.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**제11조 자료의 제출 등**

-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  1. 매분기 : 부가가치세신고서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
  2. 매반기 : 반기결산보고서, 부가가치세신고서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
  3. 매 년 :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(결산재무제표), 연결재무제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주주명부, 정관,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, 사업계획서, 추정재무제표(3개월), 주요거래처현황,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(KS, ISO, 특허권 등), 노사분규확인서, 기타 제품설명서, 동업계 참고자료 등
  4. 수 시 :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자금용도확인서류 등
-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  1.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
  2.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
  3.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

**제12조 기타 특약사항**

	본 인 (인)
--	---------



# 추가약정서 (판매기업용)

##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본인은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」을 위한 20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자 여신거래약정(이하 "원 약정서"라 한다)에 추가하여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.

**제1조 (서류의 제출)** 본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귀 행에 제출하기로 합니다.

- 제출서류  
가.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청서(또는 현금입금 신청서)  
나. 본인 발행 세금계산서  
다. 기타 귀 행이 요청하는 서류
- 본인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서류 전송 및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서류를 귀 행의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- 본인의 거래처(구매기업)가 전송하여 귀 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담보 외상매출채권 명세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본인이 확인한 후 대출신청 또는 현금입금신청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제1항의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.

**제2조 (입금계좌 지정)**

대출금 또는 상기 채권만기시의 현금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합니다.

계좌번호 :

예금주 :

**제3조 (개별대출의 실행)**

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INTERNET(인터넷) 등의 방법으로 귀 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담보 매출채권(귀 행이 원 약정서 및 본 추가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취급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귀 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본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, 그 채권의 채무자인\_\_\_\_\_(이하 "거래처"라 합니다)로부터 통보받은 구체적인 채권명세를 기초로 귀 행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매출채권 내역을 뜻하며, 이하 "매출채권"이라 합니다)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하고, 귀 행 또는 인터넷 등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취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대출받기로 합니다.  
단 본인이 귀 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 매출채권은 대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지급일이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.

**제4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**

-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변제기일로 합니다.
- 제1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귀 행이 동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하며, 거래처가 지급 기일에 귀 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
-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입금(또는 결제)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기업들(본인 포함)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 분,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,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.

**제5조 (대출의 제한)**

- 본인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상의 신규여신금지 기업 또는 귀행의 내규에 의한 신규여신금지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귀 행은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 전산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귀 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귀 행 전산상의 장애로 귀 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기타 귀 행이 채권양도통지의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제3자에 대한 귀 행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못 할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는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“원 약정서”상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, 귀행과 거래처간에 체결한 ‘거래처의 협력기업들(본인 포함)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총 대출한도’를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**제6조 (정보제공의 동의)**

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인에 관한 기본정보 및 개별대출 실행내역등의 거래내역을 “거래처”에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.

**제7조 (면책)**

- 제출서류의 허위, 위·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
- 본 약정서의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**제8조 (상환 의무)**

본인의 거래처와 귀 행 간에 사전에 협의한 CMS, Real Time Banking 기타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,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인터넷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
**제9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**

본 추가약정, 원 약정서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, 다음으로 원 약정서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의 순서로 적용됩니다.



# 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

## (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귀 행과 20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 체결한 “여신거래약정서”에 따라 약정한 등 대출금의 여신기한 종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채무자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구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(30년) 내에서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동연장처리 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위 약정에 의한 대출이 대출기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
2. 채무자에 대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 정보 ·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· 부도정보 · 관련인 정보 ·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
3. 거래처(구매기업)와의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



#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(기업용)

## (포괄계약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(이하 "갑"이라 합니다)과 \_\_\_\_\_(이하 "을"이라 합니다)은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, 을이 \_\_\_\_\_(이하 "병"이라 합니다)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### 제1조 (계약의 목적)

을의 병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갑이 을에게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갑과 을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# 제2조 (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)

을은 아래의 피담보채무(이하 "피담보채무"라 합니다)를 담보하기 위하여, 을과 병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을이 병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(이하 "대상채권"이라 합니다)전액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.

피담보채무의 범위	갑과 을 당사자 사이에 20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추가약정서(이하 "여신거래약정"이라 합니다)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
기본계약	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을과 병이 20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 (또는 체결하는) 일체의 계약 등 또는 병과 갑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을이 병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의 원인 행위 등

### 제3조 (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)

- ① 개별 송납방식인 경우
  1. 을이 병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·확정되는 경우 병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받은 갑은 을을 대리하여 갑과 채권양도계약(자기계약)을 체결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송납을 병에게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
  2. 을은 제1항의 대리권 수여 및 자기계약체결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갑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
  3. 갑은 병으로부터 교부 송부받은 채권양도송납서에 확정일자를 득한 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니다.
- ② 포괄 송납방식인 경우
  1. 을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을을 대리하여 병 앞 포괄채권양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갑에게 수여합니다.
  2.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병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양도된 것으로 봅니다.
  3. 갑은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서(포괄 송납방식용) 원본을 병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.

### 제4조 (을의 진술 및 보증)

- ① 을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, 대상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, 병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, 병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갑이 을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병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.
- ② 제4조 제1항에 따라 을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,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그 즉시 갑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
### 제5조 (변제충당 및 정산)

갑이 을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병에게 행사함에 따라 병으로부터 받은 금원은, 우선적으로 갑의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12조의 총당순서에 따라 을의 갑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,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을이 지정하는 을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. 단 을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6조 (담보가치의 유지)

대상채권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사고, 사변,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물품등의 하자, 불량 등이 발생하여 갑이 대상채권 대금을 병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, 부족금액에 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

### 제7조 (특약사항)

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약정서(여신거래 약정서(1), 추가약정서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),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포괄 계약)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.	본인	(인)

20 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

채 권 양 수 인 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\_\_\_\_\_ 본인(채무자 겸 채권양도인) \_\_\_\_\_ (인)  
\_\_\_\_\_ (인) 주 소

주 소  
업 체 코 드 : \_\_\_\_\_  
중 심 업 체 명 : \_\_\_\_\_  
중 심 업 체 사 업 자 번 호 : \_\_\_\_\_

